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19조)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및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간 연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유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285억원(연평균 42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22조제8항)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40) 경감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은 68개 기관이 있고, 약 1만 1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입원환자는 9만 6천명, 외래환자는 73만 6천명이 진료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보건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¹⁾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전

문병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을 10%포인트씩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²⁾된 의료기관은 없음.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국립대학병원, 보훈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은 취득세 감면율이 50%이고,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2) 참고로, 정부는 5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1개소씩 지정하고 있음

권역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일자	2017. 8. 21.	2020. 7. 31.	2020. 7. 31.	2021. 7. 26.	2022. 4. 13.

자료: 황민화, 김환희, 박지영(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 “2023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소개), 정책보고Public Health Weekly Report Vol17, No 34, 2024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재산세 감면율이 75%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세 감면율이 2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병도(I)의원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총 4.2억원(연평균 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22조의2)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최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지원 및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